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기간제 교원 채용 결격사유 조회 부적정
관계기관 흥도유치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제32조(기간제교원), 「경기도 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결격사유를 확인 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흥도유치원에서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동일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이전 채용 시 실시한 결격사유 조회로 같음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기간제교원 채용 결격사유 조회 부적정 현황

직(종)	성명	임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여부	
			성범죄 경력조회일	아동학대 전력조회일
기간제교원	○○○	2021. 10. 18. ~ 10. 27.	2021. 7. 19.	2021. 7. 19.
기간제교원	○○○	2022. 5. 31. ~ 2. 28.	2022. 3. 14.	2022. 3. 14.

【조치할 사항】

- ① 홍도유치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